광고총량제 실효성 위해 **중간광고 순차적 시행 필요**

지상파 방송광고의 광고총량제가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광고의 유형별로 횟수와 허용량을 제한했던 것과는 달리 광고의 총량만 규제하고, 허용된 총량 안에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광고편성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프로그램광고(프로그램 시간의 10% 이내), 토막광고(매시간 2회, 회당 1분30초 이내), 자막광고(매시간 4회, 회당10초 이내) 등을 편성 시간당 평균 15% 이내, 최대 18% 사이에서 총시간만을 규제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4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을 의결했다. 그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지상파 광고총량제 시행으로 광고 종류별 칸막이 규제가 도입된지 42년 만에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겠으나 업계에서는 지상파 규제 완화의 핵심인 중간광고 시행이 빠져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상파 광고국 관계자는 “광고편성의 자율성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광고총량제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의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일부 인기 프로그램에서는 광고를 추가로 판매할 수 있겠지만, 중간광고가 없는 지상파방송에

〈표〉 방송법 시행령 개정전후 비교표

구분	현행	개정
광고 시간	★ 지상파는 개별 칸막이 규제, 유료는 시간당 총량제 적용 – 지상파 등 : 방송프로그램광고(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100), 토막광고(매시간 2회, 매회 1분30초), 자막광고(매시간 4회, 매회 10초), 시보광고(매시간 2회, 매회 10초) – 유료방송 등 :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을 적용하되 토막광고(매시간 2회, 매회 1분40초), 자막광고(매시간 6회, 매회 10초)	★ 광고총량제 도입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채택 – 지상파 등 : 편성시간당 평균 15/100, 최대 18/100 ※ 지상파TV프로그램광고 시간은 최대15/100 – 유료방송 등 : 편성시간당 평균 17/100, 최대 20/100

서 광고를 추가로 판매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후CM이 늘어나게 된다. 그럴 경우 프로그램 시청률은 물론 광고시청률까지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경쟁력과 광고 효율성까지 떨어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최대 허용량까지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9월초에 있었던 미디어크리에이트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가을 광고판매 설명회에서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고판매 포커스는 광고총량제가 아닌 가상광고에 맞춰져 있었다.

공정한 미디어 경쟁 환경 조성이 바람직

광고업계에서는 이번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 지상파 중간광고도 순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간광고는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광고형식임에도 국내 지상파방송에서만 금지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료방송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중간광고를 둘러싼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비대칭 규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중간광고는 지상파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방송광고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중간광고 없는 총량제는 광고주, 시청자, 방송사 모두에게 도움이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중간광고 없는 광고총량제는 그 실효성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제로 지상파방송의 시청률과 광고매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인터넷광고, 모바일광고 등 새로운 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 지상파방송이 독과점적 지위를 누렸을 때의 규제 정책으로는 공정한 미디어 경쟁 환경 조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40세대의 고정형 TV 시청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문 교수는 "지상파방송이 수준 있는 콘텐츠를 비교적 저렴한 수신료 혹은 무료로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때 더 이상 비대칭적 규제로 차별화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A